그룹 내 용역과 이전가격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기능은 독립기업 간 거래 조건으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스위스에는 이전가격 법률이 없습니다. 독립기업 원칙은 연방직접세법(DFTA)의 숨은 이익분배 및 숨은 자본출자에 관한 규정에서 도출되며, OECD 지침을 참조하여 적용됩니다. 스위스 연방세무청은 2024년에 이러한 접근방식을 확인하는 질의응답 문서를 발표했습니다.[1] 싱가포르에는 소득세법 s. 34D에 법정 독립기업 원칙이 있으며, 총매출이 1,000만 싱가포르달러를 넘는 회사에는 이전가격 문서화가 의무입니다. 조정에는 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상적 지원 용역에는 원가에 5%를 더하는 안전항(safe harbour)이 적용됩니다.[2]

전형적인 이중 허브 그룹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스위스 운영회사는 개발계약에 따라 재단을 위해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용역계약에 따라 재단이나 스위스 회사에 사업개발, 커뮤니티 및 지원 용역을 제공합니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브랜드나 독점 도구를 라이선스합니다. 개발계약은 원가에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고부가가치 개발의 경우 이 마진은 일상적 용역에 대한 5% 안전항을 넘으며, 비교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기준으로 벤치마킹하면 실무상 8~15% 범위에 있습니다. 사업개발 및 지원 용역계약은 그것이 일상적이라면 싱가포르에서 원가 더하기 5%로 정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AS가 토큰 프로젝트의 사업개발을 일상적 용역 이상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비교 가능한 사용료율을 참조하여 가격이 정해지지만, 프로토콜 브랜드의 경우 그러한 사용료율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룹은 이익분할법이나 잔여이익법을 사용하고 그 논거를 문서화합니다.

양국 세무당국에는 각각 특별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크 세무당국은 재단에 대한 저가의 개발 작업이나, 관리자가 실제로는 추크에 있는 싱가포르 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수수료를 통해 가치가 스위스를 떠나는지를 살핍니다. IRAS는 DEMPE 실질이 없는 스위스 지식재산 소유자에 대한 사용료를 통해 가치가 싱가포르를 떠나는지를 살핍니다. 조약의 특수관계기업 조항과 상호합의절차는 조정 후 이중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지만 느립니다.[3] 거래 시점에 작성된 문서만이 유일하게 효율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주

1. DFTA, SR 642.11, Art. 58 para. 1 lit. b(숨은 이익분배는 과세 이익에 가산됨); Swiss Federal Tax Administration and SIF, "Transfer pricing: questions and answers", 2024년 2월 23일 발표; FTA Circular No. 4 of 19 March 2004, 용역회사에 관한 회람(원가가산). ↩
2. Income Tax Act 1947, s. 34D(독립기업 원칙) 및 s. 34F(이전가격 문서화; s. 34E에 따른 가산세); IRAS e-Tax Guid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7판, 2024년 6월 14일, sections 6 and 14(문서화 기준; 원가 더하기 5%의 일상적 지원 용역). ↩
3. 스위스–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2011년 2월 24일), SR 0.672.968.91, Art. 9(특수관계기업) 및 Art. 24(상호합의절차). 제G편 제IX장 및 제M편 제IX장.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